



행정소송의 종류

2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3)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차이점

- 1) 제소기간 (취소소송)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무효등확인소송) 제한 없음
- 2) 판단방법 (취소소송) 처분이 위법하면 바로 인용
(무효등확인소송)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

(4) 결론

: 제소기간을 지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리

행정소송의 요건

4

(1)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법령상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피고

(3)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소송요건

5

(5) 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대법원 20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쟁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소송요건

6

(6) 대상적격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통지 등

대법원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집행정지

7

(1) 의의

- 소송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2) 요건

- ① 처분의 존재, ② 본안소송 계속 중,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판례 - 대학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 등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 사업비 환수처분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음

집행정지

8

(3) 효력

- 집행정지 결정 - 보통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 참여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함
- 참여제한 등 처분을 통지 받은 회사의 경우에 승소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처분 등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 또는 1심 판결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행정소송, 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